

##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사 건 2014카합10095 도서출판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채 권 자 이 옥 선 외 8  
채 무 자 박 유 하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 및 이  
유를 변경합니다.

### 변경 전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의 출판, 발행, 인쇄, 복  
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박유하는 신청인과 신청인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취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변경 된 신청취지

법무법인 율

## 주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의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박유하는 채권자들과 채권자들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취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의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박유하는 채권자들과 채권자들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취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1. 신청취지 변경

채권자들은 기존의 신청취지를 주위적으로 하고, 「제국의 위안부」의 일

부 표현을 선별하여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취지를 예비적 신청취지로 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합니다.

## 2. 신청취지 변경의 원인

채권자들은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채권자들의 경험, 객관적인 사실과는 동떨어진 사실을 기술하고 채권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재판부가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면 채권자들의 명예를 매우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표현들 중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채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할 수 없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바입니다(별지목록 기재 부분은 최초 신청서에 첨부된 부분에 대하여 삭제와 수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채권자들을 포함한 일본군'위안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

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겪었던 개인적 경험을 왜곡하여 표현하여 이 책을 접하는 독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을 폄훼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별지목록 기재 사실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명예훼손 표현을 소개하자면 채무자 박유하는““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33쪽 7줄), “매춘업에 종사”(112쪽 15줄),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246쪽 7줄),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296쪽 19줄)이라고 기술하는 등으로 일본군에 의하여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며 희생당한 위안부들을 매춘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박유하는 “노예적이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137쪽 3줄), “그들의 성의 제공은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137쪽 6줄),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265쪽 2줄)라고 표현하는 등 전쟁범죄의 심각한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들이 마치 일본군국주의 일원으로서 일본군의 협조자적 지위에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여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외 별지목록 기재 사실에 드러나듯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이 우리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UN에서 수많은 인권보고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일본군의 죄상이 인정된 사실과 심지어 일본 정부의 1993년 고노담화와 1994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자인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본 극우세력과 현 아베내각은 끊임없이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한 강요된 성노예로서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일본 극우세력과 현 아베내각의 주장은 채무자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 박유하의 주장은 전쟁범죄 피해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 법률적인 책임인정,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법적 피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이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고는 채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5.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 승 봉

담당변호사 홍 장 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 상 희

담당변호사 박 갑 주

담당변호사 김 수 정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 진 국

담당변호사 장 완 익

담당변호사 정 연 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법무법인 율**

